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
----------	----

제출년월일 : 1999. 4. 13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제한된 조직과 인력으로 새로운 시책 및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태스크포스팀의 사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군수는 실과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TASK FORCE 시행계획 : 별첨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군수는 실과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실·과장의 직급 등)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출장소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2조(실·과장의 직급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군수는 실과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p>			

TASK FORCE 施行計劃

課長	副郡守	郡守
이희익	가재근	이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익 기획실장 이승

재무과장 홍민

TASK FORCE 施行計劃

制限된 組織과 人力으로 當面한 業務를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業務의 限界를 뛰어 넘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現實對應方案으로 基本業務에 追加하여 別途의 課業을 賦與하는 制度를 施行코자함

1. 推進概要

가. 편성대상: 6급 이상직원(부원: 6급 담당 부장: 5급 과장)

나. 시행일시: 5월 1일

- (1) 준비기간: 99. 4. 1- 4. 30.(30일간)
- (2) 시책설명: 99. 4. 13
- (3) 의견청취: 99. 4. 15.
- (4) 규칙제정: 99. 4. 23일한
- (5) 과업선정: 99. 4. 26일한
- (6) 과업부여: 99. 5. 1 (과업명령)

다. 대상업무

- (1) 새로운 시책업무로 난이도 높은 업무로 군수가 정함.

라. 과업부여

- (1) 6급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편성함.

마. 추진체계

- (1) 6급을 부원으로 하고, 5급을 부장으로 하며, 부군수를 실시단장으로 한다.

2. 推進方法

가. 실행: 매주 1회 이상 실·과장(5급)책임하에 토의와 추진.

나. 보고: 매월 첫주 월요일 참모회의시보고.

다. 평가: 분기별, 과업종료시 실시

라. 종료: 사업완료후 다시 군수로부터 과제를 부여받는다.

3. 行政事項

가.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본업무+ 과업지시업무 각각 50%.

나. MBO 적용: 연말평가, 특별상여수당 지급. (추경에 계상)

*

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직제규칙개정: 4월 30일까지 완료.